

대구고등법원 2022. 9. 28 선고 2021나2140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]

---

### 재판경과

대구고등법원 2022. 9. 28 선고 2021나21402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21. 1. 21 선고 2018가합205081 판결

### 전문

**원고, 항소인A**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

담당변호사 최석완

**피고, 피항소인**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

**변론 종결**2022. 9. 14.

**판결 선고**2022. 9. 28.

**제1심판결**대구지방법원 2021. 1. 21. 선고 2018가합205081 판결

### 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,467,6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5. 1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7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5. 1.부터 2020. 6. 1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정용달

판사홍은아

판사박지원